

#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8월 21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9년 8월 2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5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9. 4) 상정
- 제15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9. 4) 원안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과장 박 상 설)

###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자체심사 금액기준 등의 상향 조정,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증가율이 직전 대비 2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3년마다 투자 심사를 받도록 하는 한편, 청사 신축 시 심사의무 등의 규정을 보완코자 함.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를 수시로 하여야 하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에 명시된(투자심사대상·재심사) 사항을 조례에 별도 표시 않고 그 관계 규정을 따르도록 함. (안 제2조, 제7조)
-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 심사를 실시하도록 개선함.(안 제5조제1항)

- 상·하반기 투자대상 사업 심사 의뢰 시 단위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표, 회계별 가용재원 판단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안 제5조제4항, 신설)
- 추진시기·규모 및 자원조달 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 명백할 경우 반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없 음

#### 나. 반대토론

- 없 음

###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 6. 소수의견

- 없 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부천시 지방재정투·용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지방재정투·용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를 “「지방재정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4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투자심사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용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에 따른 심사대상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국가관련 사업계획에 따라 확정된 사업

2.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제외 대상 사업

제4조 중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실시설계”를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로 하고, “있다”를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9월 30일”을 “10월 31일”로 하고, “긴급을 요하는”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으로 하며, “수시로”를 “수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장 및”을 “과장 또는”으로 하며,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및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상반기 심사는 2월 5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7월 5일까지 투자심사 주관국장에게”를 “투자사업 중 제2조 및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 주관부서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투자심사의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 판단서
4.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6조제1항 중 “주관국장”을 “주관과장”으로 하고, “상반기 심사는 5월 5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10월 5일까지”를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관과장은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 중 추진시기·규모 및 자원조달 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사업에 대한 투자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심사) 재심사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에서 정한 사업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중 “주관국장”을 각각 “주관과장”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천시 지방재정투·용자사업 심사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446호
의결 년월일	2009. 9. 8. (제154회)

제출년월일 : 2009. 8. 21.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투·용자사업 심사규칙」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용자사업에 대한 자체심사 금액기준 등의 상향 조정,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증가율이 직전 대비 2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는 한편, 청사 신축 시 심사의무 등의 규정이 개선·보완 되었음.
- 이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를 수시로 하여야 하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에 명시된(투자심사대상·재심사) 사항을 조례에 별도 표시 않고 그 관계 규정을 따르도록 함. (안 제 2조, 제7조)

- 나.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하도록 개선함.(안 제5조제1항)
- 다. 상·하반기 투자대상 사업 심사 의뢰 시 단위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표, 회계별 가용재원 판단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 라. 추진시기·규모 및 자원조달 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 명백할 경우 반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 부천시 지방재정투·용자사업 심사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지방재정투·용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를 “「지방재정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4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투자심사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용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에 따른 심사대상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국가관련 사업계획에 따라 확정된 사업
2.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제외 대상 사업

제4조 중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실시설계”를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로 하고, “있다”를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9월 30일”을 “10월 31일”로 하고, “긴급을 요하는”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으로 하며, “수시로”를 “수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장 및”을 “과장 또는”으로 하며,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및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상반기 심사는 2월 5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7월 5일까지 투자심사 주관국장에게”를 “투자사업 중 제2조 및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 주관부서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투자심사의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 판단서
4.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6조제1항 중 “주관국장”을 “주관과장”으로 하고, “상반기 심사

는 5월 5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10월 5일까지”를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주관과장은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 중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 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사업에 대한 투자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심사) 재심사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에서 정한 사업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중 “주관국장”을 각각 “주관과장”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제10조에 따라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재정투·융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재정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44조----- ----- ----- ----- ----- ----- ----- ----- ----- ----- -----.</p>
<p>제2조(투자심사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li> <li>2. 타 시·군 및 자치구와 관련되는 사업</li> <li>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p>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심사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2조(투자심사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제3조에 따른 심사대상 사업</li> <li>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p>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심사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② 투자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상반기 심사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9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심사를 할 수 있다.</p> <p>③ 사업주관 국장 및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1관서의장(이하 "심사의뢰자"라 한다)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및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상반기 심사는 2월 5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7월 5일까지 투자심사 주관국장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p> <p>&lt;신 설&gt;</p>	<p><u>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u></p> <p>② ----- ----- ----- ---10월 31일 -----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 수시 ----- -----.</p> <p>③ -----과장 또는 ----- ----- ----- 투자사업 중 제2조 및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 주관부서에 -- -----.</p> <p>④ 투자심사의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단위사업계획서</li> <li>2. 투자우선순위표</li> <li>3. 회계별 가용재원 판단서</li> <li>4.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li> </ol>

현 행	개 정 안
<p>제6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투자심사의 의견을 받은 투자심사 <u>주관국장은</u> 심사를 완료한 후에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심사내용이 포함된 결과를 <u>상반기</u> 심사는 5월 5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10월 5일까지 <u>심사의뢰</u>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lt;신 설&gt;</p> <p>② (생 략)</p>	<p>제6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 -----<u>주관과장</u>----- ----- ----- ----- ----- <u>심사완료일부터 14일이내에</u> ----- ----- -----.</p> <p>② <u>주관과장은</u> 심사의의를 받은 투자사업 중 추진시기·규모 및 <u>재원조달 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u> 해당사업에 대한 투자사업을 심사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제7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재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p> <p>1. 투자심사 후에 사업비가 5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p> <p>2. 투자심사 후에 3년 이상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p>	<p>제7조(재심사) 재심사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에서 정한 사업으로 한다.</p>

현행	개정안
<p>3. 투자심사 후에 사업비가 50퍼센트 미만 늘어난 사업이라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p> <p>가. 시자체 심사 투자사업 중에서 투자심사 후에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p> <p>나. 도의뢰 심사 투자사업 중에서 투자심사 후에 사업비가 3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p> <p>다. 중앙의뢰 심사 투자사업 중에서 투자심사 후에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p> <p>제8조(심사결과에 대한 조치) ① (생략)</p> <p>② 심사의뢰자는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결과 및 사업추진 상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투자심사 <u>주관국장</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0조(사후효과분석)① (생략)</p> <p>② 투자심사 <u>주관국장</u>은 사후효과 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의뢰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8조(심사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주관과장</u>----- -----.</p> <p>제10조(사후효과분석)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주관과장</u> ----- ----- ----- ----- -----.</p>

## <관계법령발췌서>

### ○ 지방재정법

제37조 (재정투·용자사업에 대한 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용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재정투·용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용자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시·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특별시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신규 투·용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용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과 다른 시·도와 공동으로 투·용자하는 사업

2. 시·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용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용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과 다른 시·군 및 자치구와 공동으로 투·용자하는 사업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 투·용자사업으로서 그 소요사업비가 50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등의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비(소요사업비 중 토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가 100억원 이상인 청사·시민회관·구민회관 등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③ 삭제 <2009.5.21>

④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용자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자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조사를 한 투·용자사업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이의 반영여부와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유를 적시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투자심사의 기준 그 밖에 투자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4조 (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①제41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5.21>

② 투자심사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3.14, 2008.3.4, 2008.8.14, 2009.2.9>

### 1. 자체심사

가.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 5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 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군·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업비 30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도의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다. 시·군·구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라. 시·도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 2. 시·도의뢰심사

가. 시·군·구의 사업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나. 2이상의 시·군·구와 관련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다. 시·군·구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군·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

### 3. 중앙의뢰심사

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사업비 300억원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나. 2이상의 시·도와 관련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다.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라. 시·도 또는 시·군·구의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마.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도의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

바.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8.14>

### 1.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

나. 소방장비, 119구급장비 및 소방용헬기 구입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라.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

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제4조 (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  
되,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수립후 실시설계 용역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  
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  
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  
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8.8.14>

②투자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수시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상반기 심사의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 심사의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수시심사의 경우에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4>

③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의 경우 상반기 심사는 3월 20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구의 경우 상반기 심사는 2월 말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8월 1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당해 사업  
의 투자심사의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4, 2008.3.4, 2009.2.9>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
4. 기타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6조 (재심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  
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4>

1.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퍼센트이상 늘어난 사업
2.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퍼센트미만 늘어난 사업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시·군·구 자체검사 투자사업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 나. 시·도의뢰심사 투자사업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억원이상 늘어난 사업
  - 다. 중앙의뢰심사 투자사업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3. 투자심사후 3년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